

발명교육개발원 지정 공고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발명교원 양성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발명교육개발원’을 지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특허청장

1. 공고 개요

○ (공 고 명) 발명교육개발원 지정

* 발명교육활성화(초·중·고) 사업 관련

○ (사업기간) 2026년 ~

* 선정진행상황, 설치방식에 따라 변동가능

○ (추진배경) 발명교육은 미래 인재들의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중요

- 특히, 발명교육의 조기 수행은 교육의 지속성을 높이고, 저학년
일수록 발명 태도·흥미도 및 문제해결력이 향상

* 출처 : 발명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성 메타분석(서울대, '18.2월)

○ (필요성) ²⁰²²개정교육과정 개편 및 디지털 교육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기관(발명교육개발원)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연구 필요

2. 발명교육개발원 신청 요건

□ 신청 자격기준

- (법적요건)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발명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일 것
2. 발명교육 업무를 수행할 인력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전담조직에는 발명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발명교육개발원 주요 역할

- ① (발명교육 정책연구) ²⁰²²개정교육과정 개편 및 디지털 교육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명교육 정책연구 및 콘텐츠 개발 필요
- (발명교육 체계화 연구) 정규 교육과정과 늘봄학교의 연계성 및 학년별 학업수준을 고려하여 학교중심 발명교육 과정 체계화

학년	중심 활동주체	교육과정 연계 발명교육 개발 추진방향(안)
초 등	1~6 정규 교육과정(통합교과, 자율시간, 창체 등) +늘봄학교	(정규) 물건 교과서(통합교과 2-2)를 활용한 발명교육 제공 (정규-자율) 자율시간용 발명교과서(인정도서)를 통한 발명교육 (정규-창체) 미래역량, 진로탐색 등을 위한 교과연계 콘텐츠 (비정규-늘봄) 성장·발달을 위한 놀이중심 발명개념 소개 및 활동
중 고 등	중등 정규 교육과정 (기술과가정, 자율시간)	(정규-기술과가정) 진로·최신기술과 연계한 발명교육 콘텐츠 (정규-자율) 중학교 자율시간 연계형 발명교과 개발 연구
	고등 정규 교육과정 (지식재산일반, 전문교과 7종)	(정규-지식재산일반) 지식재산 일반의 채택률 제고를 위한 연구 (정규-전문교과) 발명·특허기초 등 전문교과 7종에 대한 지도서 및 참고서 개발 연구 추진
기타	기타 정책연구	(정책연구) 발명교육의 저변 확대, 발명교육 인프라 개선, 창의적인 발명영재 양성 등 발명교육 정책 발전방향 연구

- (지역특화 교육프로그램) 지역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

- ② (발명교육 조사·분석) 전국단위 발명교육 운영 통계, 발명교육 성과 분석 및 우수사례 연구 등 발명교육 조사·분석을 통한 발명교육 정책수립 효율화
- (발명교육 조사·분석) 국내외 발명교육 동향 분석, 통계자료 구축, 우수사례 및 성과분석 등 발명교육 정책연구를 위한 기초조사·분석
 - (지역현황 조사) 지역의 학교·교사·학생 단위 발명교육 실태조사, 지역 내 발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추진
- * 지역내 발명교육 운영 실태조사, 지역 발명대회 참가자 수 및 만족도, 지역 학생/교사 대상 현장인터뷰 및 프로그램 피드백 제공, 지역 우수사례 발굴 등 추진

- ③ (발명 전문인력 양성) 정규교과 시간에 발명교육을 지도할 발명교원 양성을 촉진하고, 민간 발명강사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 지원
- (교원양성) 발명교육 역량을 겸비한 전문교원 양성을 위하여 커리큘럼 개발을 추진하고, 교·사대와 협력하여 예비 발명교원 양성

<교대 발명교육 커리큘럼 개발 계획(안)>

교육 대학 (초등)	소양 과정	▸ 교육대학 재학생들이 기본적인 발명교육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강좌 개설·운영(교재개발 및 보급, 운영 등) * 발명교육 개론, 통합교과 물건 2-2 발명내용 지도 학습법 등
	심화 과정	▸ 실과교육과 등 주요 관련학과는 심화 교육과정 운영 * 발명과 지식재산교육의 실제, 자율시간 연계 발명교육 지도

- (직무연수·교육 제공) 교원·민간강사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형태의 발명교육 직무연수·교육을 제공
- ④ (기타) 발명교육 강의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발명교육개발원-발명교육 유관기관 간 유기적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등

4.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정량평가^{설립 적절성}와 정성평가^{설립 추진역량}를 합산

- (정량평가, 40점) 기관 제반사항, 발명교육 관련 업무 전담조직 확보여부, 발명교육 관련 업무 종사자 여부, 시설 및 장비 등 지정 필수요건 평가
- (정성평가, 60점) 발명교육개발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적절성, 이해도, 기관의 사업추진 역량을 종합 평가
- 발명교육 연구개발 계획, 발명교사 양성을 위한 전문성 함양 등 교육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종합 평가

<발명체험교육관 설치 교육청 선정기준(안)>

평가요소			평가항목
운영 실적 (40)	정량 평가	기관 제반사항(10)	■ 기관 연혁, 요건 해당여부(10)
		전담조직 및 인원(20)	■ 발명교육 전담조직 보유 및 발명교육 3년이상 종사자 인원 현황(20)
		시설 및 장비 등(10)	■ 발명교육 관련 시설 및 장비 보유(10)
운영 추진역량 (60)	정성 평가	사업계획 내용의 적절성(45)	■ 발명교육 정책연구 추진계획, 프로그램 개발 계획의 체계성(10)
			■ 발명교육 조사·분석 계획의 실효성(10)
			■ 발명교육 전문인력 양성 계획의 적절성, 지역교원 강사대상 직무교육 계획의 구체성(10)
			■ 교육환경 변화의 대응역량, 지역 발명교육 확산 가능성(15)
		기관의 사업추진역량(15)	■ 기관장의 업무 추진역량 (5)
			■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 수립여부(5)
			■ 인력, 조직구성의 체계성 (5)
가점		■ 지자체 관련예산 투입여부 (5)	
		■ 발명교육 관련 전문기관 인증 현황 (5)	

* 운영실적(요건 평가)는 공통 평가, 운영 추진역량은 국가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역량과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추진

- (선정심사위원회) 총 7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과반 이상으로 구성

<선정심사위원회 위원구성(안)>

분야	위원	위원자격
내부	▪ 발명교육개발원 소관과장 및 발명교육 관련부서장 등	과장급 이상
외부	▪ 발명교육 정책·운영 전문가 ▪ 지식재산 정책 전문가 ▪ 창의교육 관련 현장전문가	기관의 해당분야 과(팀)장급 이상 또는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

□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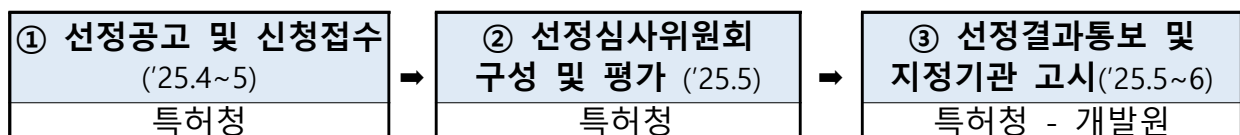
-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현장·최종심사로 결정

- (서류심사, 1단계) 신청서 제출여부,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등 서류 검토 (신청기관 현장검증은 필요시 추진)
- (최종심사, 2단계) 발표심사와 서류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80점 이상시 선정)

* 최고 및 최저 평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출

- (향후일정) 발명교육개발원 공고를 통해 지정신청 접수, 선정심의 등을 통해 발명교육개발원 지정

< 추진 일정(안) >



5.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제출방법) 공문 및 우편접수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

※ 우편 접수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 개인정보보호법('11.9.30. 시행)에 따라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는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를 반려함

○ (제출서류) 지정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제출기한) 2025. 6. 13.(금)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제출대상)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042-481-3572, 5237)

6. 기타사항

○ 심사일정은 추후 통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와 첨부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붙임 1

발명교육개발원 지정(변경) 신청서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 5.>

발명교육개발원 []지정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	-----

지정 신청	신청인	기관(단체)명 (설립연월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홈페이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변경신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기관(단체)명		
	[] 기관(단체)의 대표자		
	[] 기관(단체)의 주소지		
	[] 운영계획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지정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발명교육개발원의 운영계획 나. 발명교육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현황 다. 시설·장비 보유 현황 라. 최근 3년간의 발명교육 연구·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2.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발명교육개발원』 사업 계획서

2025. . .



목 차

I. 추진배경

1. 추진배경
2. 지정 필요성

II. 기관 개요

1. 기관소개 및 연혁
2. 기관위치, 조직 구성, 인력 현황(발명교육 전문인력 포함 등)
3. 시설, 기자재 등 주요장비·설비, 연간 운영예산
4. 주요업무

III. 사업·운영계획

1. 발명교육개발원 신청형태
2. 발명교육개발원 사업계획
 - 2.1 발명교육 정책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계획
 - 2.2 발명교육 조사·분석 계획
 - 2.3 발명교육 전문인력 양성 계획
 - 2.4 기타 발명교육 전문인력 양성계획

3. 발명교육개발원 운영 방안

- 3.1 예산과 인력 등 운영방식, 조직구성 등 운영체계의 적정성
- 3.2 교육청, 학교, 기업, 지역사회 등과 연계 가능성

IV. 기타

I. 추진배경

1. 추진배경

< 기본 계획 제출 배경 기재 >

2. 필요성

< 지정의 필요성 설치 목적 등 >

II. 기관 개요

1. 기관소개 및 연혁

<기관 설립, 연혁, 대표 등>

<기관형태(국가 소속기관, 지자체 소속기관, 비영리법인·단체 등)>

2. 기관위치, 조직 구성, 인력 현황(발명교육 전문인력 포함 등)

<기관위치 >

<조직구성 작성시 발명관련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반드시 포함>

<인력현황 작성시 발명관련 경력(1년/3년/5년 등)으로 인원별로 구분 작성>

3. 시설, 기자재 등 주요장비·설비, 연간 운영예산

<시설 및 기자재 등 주요장비 구비현황 구체적으로 작성 >

< 장비(교육콘텐츠 자료, 키트 등) 학제별로 구축하고 있는지 등>

< 해당 시설 및 장비 보유로 발명교육개발원 수행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작성>

<기관의 연간 운영예산 및 발명교육 관련 투입 예산 현황 작성 >

4. 주요업무

<기관 주요업무 작성 요청>

III. 사업·운영계획

1. 발명교육개발원 사업계획

1.1 발명교육 정책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계획

<발명교육 정책연구 계획 작성>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계획 작성>

<기타 발명교육 연구 및 콘텐츠 개발계획 작성>

1.2 발명교육 조사·분석 계획

<전국단위 또는 지역단위 발명교육 조사·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작성>

1.3 발명교육 전문인력 양성

<발명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계획 작성>

<발명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직무연수 계획 작성>

1.4 기타사항 작성

<발명교육 유관기관 협력방안 작성>

<발명교육 현장관계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려는 사업계획 작성>

2. 발명교육개발원 운영 방안

2.1 인력 등 운영방식, 조직구성 등 운영체계의 적정성

<인력 지원 구성, 절차, 방법, 자격요건 등>

* 조직의 경우 전문부서, 전문인력 배치현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예) 발명교육개발원 운영인력 배치 안(7여명, 2개 팀)

* 인원별 자격요건, 업무배치 계획 등 적절한 운영체계로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예산 운영방향>

* 발명교육개발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항목 작성

2.2 교육청, 학교, 기업, 지역사회 등과 연계 가능성

<17개 시도교육청, 민간기업, 기타 정부부처 등 협력 방안 작성>

<일선학교,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등과 연계 가능성 작성>

<기존 교육인프라(과학관 등) 및 발명관련 기관과의 연계 계획 작성>

V. 기타

<작성방법 : 상기 부분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술>

※ 전체 사업계획서는 A4 30매 이내(기타 필요한 도면 등은 별도 첨부 가능)

참고 2

선정평가 심사기준표

평가 요소		평가 항목	배 점			
설립적절성 (40)	기관 요건 (10)	발명교육 기관 요건 해당여부(10) * 요건 미해당시 자격기준 미달	국가 소속기관, 지자체 소속기관, 비영리법인·단체 해당		국가 소속기관, 지자체 소속기관, 비영리법인·단체 미해당	
			10		X	
	조직, 인력 (20)	전담조직 및 인원 현황(20) * 전담조직이 없거나 발명교육 3년이상 종사자가 없는 경우 자격기준 미달	발명교육 전담조직 보유, 발명교육 3년이상 종사자 5명 이상	발명교육 전담조직 보유, 발명교육 3년 이상 종사자 3명 이상	발명교육 전담조직 보유, 발명교육 3년 이상 종사자 1명 이상	발명교육 전담조직이 없거나, 발명교육 3년 이상 종사자가 없는 경우
			20	16	12	X
	시설 및 장비 (10)	시설 및 장비 보유 여부(10) * 시설 및 관련장비가 없을 경우 자격기준 미달	발명교육 관련 시설(별도 사무실, 회의실 보유) 및 관련장비(교육콘텐츠 자료, 키트 등) 보유		발명교육 관련 시설(별도 사무실, 회의실 보유) 및 관련장비(교육콘텐츠 자료, 키트 등) 미보유	
			10		X	
설립추진역량 (60)	사업 계획 내용의 적절성 (45)	발명교육 정책연구 추진계획 명확성(10) <발명교육 정책 연구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보통이하
			10	8	6	4
		발명교육 조사·분석 계획의 구체성(10) <발명교육 조사분석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는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보통이하
			10	8	6	4
		발명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체계성(10) <발명교육 전문인력 양성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보통이하
			10	8	6	4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 역량(15) <교육환경 변화에 체계적인 대응 가능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보통이하
			15	12	9	6
	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15)	기관장의 업무 추진역량(5) <기관장이 발명교육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보통이하
			5	4	3	2
		유관기관 간 협력방안 실효성(5) <유관기관 간 협력방안이 실효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보통이하
			5	4	3	2
		인력, 조직구성의 체계성(5) <발명교육개발원 운영을 위하여 인력, 조직구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보통이하
			5	4	3	2
(A)계						
(B)가점	발명교육 관련 예산 현황(5) <국·비나 지방비에서 발명교육 지원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5억이상 확보	3-5억 확보	1-3억 확보	미확보	
		5	3	1	0	
	발명교육 관련 연구기관 지정 현황(5)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발명영재교육 연구원 등 연구기관 지정여부>	지정		미지정		
		5		0		
(A) + (B) = 총계						

* 시설 및 장비 보유여부 판단기준 : 시설은 연구 또는 관련업무를 위하여 별도로 60m² 이상의 공간 확보 여부(직업능력개발원 등 지정요건 참조), 장비의 경우 발명교육 연구자료(초·중·고 학제별 보유여부 확인), 키트 등을 보유하여 발명교육개발원 주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지 종합 판단